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73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김성원·고동진·김선교

이종배 • 정동만 • 김정재

박충권 · 임이자 · 박성훈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기차·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 물을 추출, 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시장규모가 2050년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핵심소재 공급망 구조 탈피와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있음.

이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해외 공급 망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분양의 자립화와 순환경제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용후 배터리"란 전기차 등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어 재제조 ·재사용·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배터리를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사용후 배터리"란 전기차		
	등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대		
	<u>상이 되는 배터리를 말한다.</u>		